

3. 참고사항

가. 입법예고

- 고성군 공고 제2009-267호(2009.3.19 ~ 2009.4.10)
- 의견제출 없음

나. 관계법령

- 주민투표법 제2조, 제5조

다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주민투표법이 2009. 2. 12자 법률 제9468호 일부 개정되었습니다.
따라서 고성군 주민투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살펴보면
 -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군의 책무를 신설하고(제2조)
 - 주민투표권자,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주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 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 수단을 마련하였음(제10조 까지)

이는 개정된 상위법에 맞도록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제반사항이 적법하므로 원안의결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 :

- 문 : 외국인도 투표권이 있는지? 또한 어떻게 구분하여 처리를 할 것인지요 ?
- 답 : 국회의원 선거 이상시에만 해당되며, 출입국관리소에서 심사합니다.
그리고 우리군의 경우에 영주권자가 11명이나 투표권자는 3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 :

- 2009. 5. 1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